선거관리 규약

제1조 [목적] 이 규약은 정관 제25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선거인]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 [선거공고 등] 선거위원장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

1.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(정관제41조 단서조항에 따라 조합원 유형에 따른 정수를 포함한다.)
2. 선거인의 자격
3. 선거일
4. 후보등록기간
5. 등록접수장소
6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4조 [선거운동의 제한] 정관 제24조에 따른다.

제5조 [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] 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
② 선거관리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한다)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.

③ 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선거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④ 기타 사항은 정관 제25조에 따른다.

제6조[선거관리 기록의 보존] ①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선거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

하고 출석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.
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 조합에서 보관한다.

제7조 [명부공람]
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, 선거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8조 [등록] ① 정관에서 정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② 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신청서, 이력서, 후보자 추천서, 등록승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 [등록심사 및 접수]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 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.

제10조 [중복 추천의 가능]
조합원은 임원 후보자에 대해 5인 이내로 중복하여 추천할 수 있다.

제11조 [기호]
선거관리상 필요시는 후보자의 기호를 정할 수 있되, 후보자 자격이 심사, 확정된 후에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2조 [등록의 무효]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 [후보자의 사퇴]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 [선거운동] 선거운동은 정관제24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제15조 [선거]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형식의 서면투표의 방법으로 한다.
③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당선인의 결정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. 단,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투표 하여 결정한다.
④ 당선인 수가 선출해야 할 조합원 유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추가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.
⑤ 직원조합원이 아닌 후원자 조합원, 자원봉사자 조합원은 제②항, 제③항 및 제④항에도 불구하고 추대 형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.
⑥ 이사장 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단, 단독후보일 경우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.

제16조 [투표용지] 서면투표시,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위원회에서 별도 서식으로 정한다.

제17조 [투표방법] ① 서면 투표시에 선거인은 후원자 조합원 이사, 자원봉사자 조합원 이사, 직원 조합원 이사, 감사의 각 선거 투표용지 기호란에 선출할 임원의 정수(정수이하도 가능)대로 소정의 기표용구로 “◯”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②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.

제18조 [투표 및 개표관리]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각각 또는 중복되게 지명할 수 있다.
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
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9조 [개표] ① 서면 투표시,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하고, 개표가 완료된 후 투표용지를 인수받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.
②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,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.

제20조 [무효투표] ①서면 투표시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
1.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
3.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
4. 장난 또는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

② 제1항의 판단은 위원회에서 한다.

제21조 [당선인의 선포]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.

제22조 [임기개시일]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.
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[시행일]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